

[첨부]



446-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
Tel : 031-289-2836, Fax : 031-287-9066

성적서 번호 : 201700616

페이지 : (2) / (총 4)

형식시험결과

업체명	(주)강운파인엑스	형식승인번호	소공17-29
품명	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	형식	유리별브형 79 °C, 1 200 g, 단독형, 스테인리스제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
조항	항목	기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정	
제3조	구조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2	적합	합격	
제4조	제어부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해당없음		-	
제5조	부품의 구조 및 기능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해당없음		-	
제6조	작동장치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2	적합	합격	
제7조	감지부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6	적합	합격	
제8조	난연성시험	외함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UL-94 규정에 따른 V-2 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, 외함의 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에는 (80 ± 2) °C 에서 24시간 보존 시 열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	해당없음		-	
제9조	온습도시험	(25 ± 3) °C, 상대습도 (93 ± 3) %에서 24시간, 사용상한온도 ± 3 °C, 상대습도 (93 ± 3) % 에서 24시간 보존하는 것을 1사이클로 하여 2사이클 반복 후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을 것.	2	적합	합격	
제10조	저온시험	사용하한온도 ± 2 °C 에서 24시간보존 후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을 것	2	적합	합격	
제11조	방사시험	- 작동장치 작동 후 즉시 에어로졸을 유효하게 방출할 것 -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을 것 - 방사시간 : 60 초 초과하지 아니하며, 설계값의 ± 30 % 이내 - 방출된 고에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 : 설계값의 ±5 % 이내	시험생략		합격	*

“계속”



형식시험결과

업체명	(주)강운파인엑스	형식승인번호	소공17-29
품명	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	형식	유리별브형 79 °C, 1 200 g, 단독형, 스테인리스제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
조항	항목	기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정	
제12조	방출온도시험	에어로졸 발생기를 (20 ± 3) °C 에서 24시간 보존 후 방사하는 경우, 표면의 온도는 400 °C 이하이며, 방출구로부터 75 °C 가 되는 거리(인체로부터의 이격거리) 및 200 °C 가 되는 거리(소화대상물로부터의 이격거리)는 설계값 이내일 것		시험생략	합격	*
제13조	충격시험	에어로졸발생기의 최저점으로부터 바닥 까지의 거리를 2 m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수평으로 자유 낙하시키는 경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한 경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을 것	2	적합	합격	
제14조	진동시험	에어로졸발생기를 기준에 따라(전진폭 2 mm, 진동수 매분 2 000 싸이클의 상하진동) 시험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, 금가거나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없어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한 경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을 것	2	적합	합격	
제15조	에어로졸 발생기의 가속노화 시험	에어로졸발생기를 기준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이 발생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	시험생략	합격	*
제16조	부식시험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	시험생략	합격	*
제17조	전원전압 변동시의기능	전원전압을 정격전압 ± 20 %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.		해당없음	-	
제18조	절연저항시험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	해당없음	-	

“계속”



형식시험결과

업체명	(주)강운파인엑스	형식승인번호	소공17-29
품명	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	형식	유리벨브형 79 °C, 1 200 g, 단독형, 스테인리스제

시험항목			결과			비고		
조항	항목	기준	시료(개)	검사결과	판정			
제19조	절연내력시험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해당없음		-			
제20조	충격전압시험	내부저항 50 Ω 인 전원에서 500 V 의 전압을 펄스폭 각각 1 μs, 0.1 μs 반복주기 100 Hz 로 가하는 시험을 15초간 실시 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해당없음		-			
제21조	전자파 내성시험	전자파 방사내성시험, 전자파전도 내성 시험, 정전기방사 내성시험,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, 서어지 내성시험 실시하여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	해당없음		-			
제22조	전기전도성 시험	이격거리 50 cm 및 90 cm 에서 각각 AC 전압을 (35 ± 3.5) kV 및 (100 ± 10) kV를 가한 후,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 통전전류가 0.5 mA 이하일 것	시험생략		합격	*		
제23조	최대높이 확인시험	시험방법에 따라 신청한 최대높이에서 시험하는 경우, 소화약제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할 것	시험생략		합격	*		
	최대면적 확인시험	시험방법에 따라 신청한 최대면적에서 시험하는 경우, 소화약제 방출이 종료된 후 3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할 것	해당없음		-			
제23조의 2	감지부 자동작동시험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해당없음		-			
제24조	소화시험	A 급	목재		시험생략	합격	*	
			중합 재료	PMMA				시험생략
				PP				시험생략
				ABS				시험생략
		B 급	유류		시험생략			
자동소화시험			해당없음	-				
제25조	표시사항	기술기준에 적합할 것	전시료	적합	합격			

※ 기타 : “*” 표시는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 제2항, 「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세칙」 제2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거 형식시험을 생략한 시험항목임.

“끝”